

#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안 번호	12300
----------	-------

제안연월일 : 2018. 3. .

제안자 :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장

## 1. 제안경위

가. 제356회국회(임시회) 제2차 정치개혁소위원회(2018.2.28.)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나. 제356회국회(임시회·폐회중) 제8차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(2018.3.1.)는 정치개혁소위원회에서 합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.

## 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18년 6월 1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인구 증가 추이를 감안하여 지역구 시의회의원 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시의회의원 선거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9조제2항).

2018년 6월 13일 이후의 지방선거 실시를 위한 다음 개정 논의 시에는 지역구 시의회의원 정수를 19명까지 증원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기로 함.



법률 제 호

##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2항 중 “13명”을 “16명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9조(공직선거 특례) ① (생략)</p> <p>② 지역선거구시의회의원(이하 이 조에서 “지역구시의원”이라 한다)의 정수는 「공직선거법」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<u>13명</u>으로 한다.</p> <p>③ ~ ⑦ (생략)</p>	<p>제19조(공직선거 특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16명</u>-----.</p> <p>③ ~ ⑦ (현행과 같음)</p>